

직원의 권리

가족 우선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법에 따른 유급 병가 및 확대 가족 및 의료 휴가법

가족 우선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법(FFCRA 또는 관련 법)은 특정 고용주에게 COVID-19와 관련된 특정 이유가 적용될 경우, 직원에게 유급 병가 및 확대 가족 및 의료 휴가를 제공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규정은 2020년 4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됩니다.

▶ 유급 휴가 자격

일반적으로 관련 법에 따라 고용주는 직원에게 다음을 제공해야 합니다.

정규 임금, 또는 해당 주정부 또는 연방정부 최저임금 중, 가장 높은 임금을 기준으로 최대 2주(80시간 또는 파트타임 종업원의 경우, 2주 임금에 해당하는)의 유급 병가를 제공해야 하며, 지급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아래의 적격 사유 조항 중 1-3항에 대해선 100% 지급해야 하며 일일 최대 금액은 \$511으로 총 \$5,110까지 지급해야 합니다.
- 아래의 적격 사유 4 및 6항에 대해서는, 2/3 지급, 일일 최대 금액 \$200 총 \$2,000까지 지급해야 합니다.
- 아래의 적격 사유 5항 해당 종업원에게는 최대 12주의 유급 병가 및 확대 가족 및 의료 휴가를 제공해야 하며, 정규임금 혹은 해당 주법이나 연방법하의 최저임금중 가장 높은 임금을 기준으로 이의 2/3 을 지급해야 하며, 일일 최대 금액은 \$200으로 총 \$12,000까지 지급해야 합니다.

파트타임 직원은 지난 근무 기간을 기준으로 그동안 정상적으로 근무하던 근무 시간을 기준으로, 이와 동일한 시간에 대해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유자격 직원

일반적으로, 직원 500 명 미만 사기업 고용주의 직원 및 특정 공기업 고용주의 종업원의 경우, COVID-19 관련 이유 최대 2주간 전액 유급 병가 또는 일부 유급 병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아래 참조). 종업원이 아래 5항의 사유로 최대 10주 동안 일부 유급 가족 및 의료 휴가를 추가로 받기 위해선, 휴가 요청 이전 현 고용주를 위해서 최소한 30일동안 근무했어야 하지만 그 자격이 주어집니다.

▶ COVID-19와 관련된 휴가의 적격 사유

직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재택 근무를 포함하여 근무를 할 수 없는 경우 COVID-19와 관련된 휴가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 | | |
|--|--|
| <ol style="list-style-type: none">1. COVID-19와 관련하여 연방, 주 또는 지방정부의 방역 또는 격리 명령을 받은 경우;2. COVID-19와 관련하여 보건 의료 서비스 제공자로부터 자가 격리하도록 조언을 받은 경우;3. COVID-19 증상이 발생하여 의료 진단을 찾거나 받는 과정에 있는 경우;4. (1)조항에 기술된 명령 또는 (2)에 기술된 자가 격리에 해당하는 사람을 돌보는 경우; | <ol style="list-style-type: none">5. COVID-19 관련 사유로 인해 학교나 보육 시설이 문을 닫거나 육아 서비스 제공자를 이용할 수 없어서 자녀를 돌보는 경우, 또는6. 미국 보건복지부에서 명시한 기타 유사한증상을 겪고 있는 경우. |
|--|--|

▶ 집행 기관

미국 연방 노동부 임금 및 근로시간 담당 부서(WHD)는 FFCRA 준수 여부를 조사하고 강제 집행할 공권력이 있습니다. 고용주는 FFCRA에 의거하여 합법적으로 유급 병가 또는 확대 가족 및 의료 휴가를 받거나, 혹은 이 법에 따라 또는 이 법과 관련하여 신고를 접수하거나 소송을 제기하는 직원을 해고, 징계하거나 차별할 수 없습니다. FFCRA 규정을 위반한 고용주는 WHD의 처벌 및 강제 집행 대상이 됩니다.

추가 정보나 신고 접수를 원할 경우:

1-866-487-9243

TTY: 1-877-889-5627

dol.gov/agencies/whd



임금 및 근로시간 담당 부서
미국 연방 노동부

